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47
----------	-------

발의연월일 : 2023. 12. 18.

발 의 자 : 조명희 · 박대수 · 성일종
엄태영 · 이종배 · 홍문표
김성원 · 배준영 · 하영제
이명수 · 이주환 · 최춘식
황보승희 · 박 진 · 박성민
태영호 · 하태경 · 배현진
정우택 · 유경준 · 김승수
유의동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비, 생산, 금융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경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게 발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체계화, 기업가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어 경제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에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는 창업자, 예비창업자,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자, 재취업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교과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시민의식 등”을 “경제시민의식, 기업가정신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의 임무)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4조(국가의 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는 창업자, 예비창업자,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자, 재취업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생략)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 이 경우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교과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 ② (생략)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생 략)	<u>경제시민의식, 기업가정신 등</u> -- ----- ----- ----- -----. ④ (현행과 같음)
--	--